

#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 (안)

## 1. 개정사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공장을 건축할때 허가를 받아야 하던것을 공업지역에서 인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을 건축할 때에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장 및 주택에 대하여는 지하층설치 의무제도를 폐지하는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며 상업지역에 한하여 전면도로폭에 따른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던것을 모든지역으로 확대하는등 건축절차와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내에서 인면적합계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은 신고로서 건축허가에 갈음함 (안 제11조 제2항 제4호)
- 나. 공장과 주택을 지하층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장과 주택의 건설공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함 (안 제62조 제1항)

- 다. 전면도로폭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상업지역에 한하여 전면도로폭의 3배까지 완화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그 대상지역을 모든지역으로 확대하여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5조 제1항)
- 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소매점의 규모를 바닥면적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에서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안[별표1]제4호 가목 (1)]
- 마.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는 사무소의 규모를 바닥면적합계 300제곱미터미만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안[별표1]제4호 가목 (1)]
- 바. 총포판매소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분류를 조정함 [안[별표1]제4호 나목 (10)]
- 사. 생산농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한 대상용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추가함 [안[별표13]제2호]
- 아. 자연농지지역안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시설 중 관광호텔에는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별표14]제2호 거목]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층 이하인 공장

제45조 제1항중 “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을 “노인시설·공동주택”으로 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으로 한다.

제62조 제1항 단서중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을 “공장·단독주택·공동주택·운동시설·전시시설·창고시설 및”으로 한다.

제81조 본문중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를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으로부터”로 한다.

제8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구역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공공공지·녹지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 다만, 시장등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별표1]제4호 가목 (1)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것”으로 한다.

[별표1]제4호 나목 (6)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으로 한다.

[별표1]제4호 나목 (4)중 “실내뉘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를 실내뉘시터·골프연습장 기타이와 유사한 것으로서”로 한다.

[별표1]제4호 나목 (9)중 “동물병원 기타이

와 유사한 것”을 “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것”으로 한다.

[별표1]제13호 다목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것”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것”으로 한다.

[별표1]제19호 아목을 삭제한다.

[별표13]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주차장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별표14]제2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위락시설(관광호텔 내에 있는 위락시설에 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1조(건축신고)① (생략)</p> <p>② 법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 (생략)</p> <p>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p> <p>① 같은 건축물안에서는 의료시설·아동시설·노인시설·다중주택·공동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탁시설·공연장·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숙박시설·유스호스텔·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을 함께 설치할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략)</p> <p>②(생략)</p> <p>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 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시지역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행정구역안에서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안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면적의 지하층을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동시설·전시시설 및 창고시설 및 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및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표”(생략)</p> <p>② (생략)</p> <p>제81조 (대지안의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띄어야할 거리는 다음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4. (생략)</p> <p>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중 도시의 계획적 개발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등이 지정·공고한다.</p> <p>②(생략)</p> <p>제8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부분 높이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p> <p>1.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p>	<p>제11조(건축신고)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도시계획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로서 2층이하인 공장</p> <p>③(현행과 같음)</p> <p>제45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p> <p>① .....노인시설·공동주택·기숙사 또는 오피스텔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과 위탁시설·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제62조(지하층의 설치) ① .....</p> <p>..... 다만, 공장·단독주택·공동주택·운동시설.....</p> <p>“표”(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1조 (대지안의 공지).....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85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구역을 표시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②(현행과 같음)</p> <p>제8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p> <p>1. ....</p> <p>.....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본다)으로부터 다음 각목의.....</p>

현행	개정안
<p>떠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구역 및 기준에 의하여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허가 할 수 있다.</p>	<p>.....다만, 시장등이 지정하여 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p>
<p>가. - 다. (생략)</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2. - 3. (생략)</p>	<p>2. - 3. (현행과 같음)</p>
<p>[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 제1항13호관련)</p>	<p>[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제2조 제1항13호관련)</p>
<p>1. - 3. (생략)</p>	<p>1. -3. (현행과 같음)</p>
<p>4. 근린생활시설</p>	<p>4. 근린생활시설</p>
<p>가. 제1종근린생활시설</p>	<p>가. 제1종근린생활시설</p>
<p>(1) 슈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같다)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p>	<p>(1).....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p>
<p>(2) - (5) (생략)</p>	<p>(2) - (5) (현행과 같음)</p>
<p>나. 제2종근린생활시설</p>	<p>나. 제2종근린생활시설</p>
<p>(1) - (3) (생략)</p> <p>(4) 정구장·헬스크럽·볼링장·실내낚시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것</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정구장·헬스크럽·볼링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 .....</p>
<p>(5) (생략)</p>	<p>(5) (현행과 같음)</p>
<p>(6)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소개업소·결혼상담소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것</p>	<p>(6) ..... ..... 500.....</p>
<p>(7) - (8)(생략)</p>	<p>(7) - (8)(현행과 같음)</p>
<p>(9) 사진관·표구점·예능계학원·기술계학원(주산·부기·타자·속기·경리·속셈·속독·웅변·변론·언어교정·컴퓨터에 한한다) 독서실·장 의사·동물병원 기타 이와 유사한것.</p>	<p>(9) ..... ..... 동물병원·충포 판매소.....</p>
<p>5. - 12. (생략)</p>	<p>5. - 12. (현행과 같음)</p>
<p>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p>	<p>13.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p>
<p>가. - 나. (생략)</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다. 상점 : 제4호 가목(1)의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것.</p>	<p>다..... .....가 1천제곱미터이상인것.</p>
<p>14. - 18. (생략)</p>	<p>14. - 18. (현행과 같음)</p>
<p>19.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p>	<p>19.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p>
<p>가. - 사. (생략)</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충포판매소</p>	<p>아. 삭제</p>
<p>20. - 32. (생략)</p>	<p>20. - 32. (현행과 같음)</p>
<p>[별표2]-[별표12](생략)</p>	<p>[별표2]-[별표12](현행과 같음)</p>
<p>[별표13]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별표13]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생략)</p>	<p>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주차장(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p>
<p>(신설)</p>	<p>[별표14]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별표14]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p>	<p>1. (현행과 같음)</p>
<p>1. (생략)</p> <p>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생략)</p>	<p>2.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 하. (현행과 같음) 거. 위락시설(관광호텔내에 있는 위락시설에 한한다)</p>
<p>(신설)</p>	<p>[별표15](현행과 같음)</p>
<p>[별표15](생략)</p>	<p>[별표15](현행과 같음)</p>